

외암 민속마을의 문화경관과 정책

A study of Oeam folk village Cultural landscape and Policy

김연희¹, 박인혜²

Kim, Yeun-Hee¹, Park, In-Hye²

요약

1980년대 국가에 민속마을 지정 사업은 새마을 운동으로 인한 마을 외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전통마을의 보존과 구제의 필요성을 근거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전통의 활용은 국가에서 인정한 마을의 고유한 전통 위에 주민들의 재해석과 변형을 가능케 했으나 현 정책에서는 이를 훼손으로 본다. 민속마을의 정책은 생활하는 주민의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민속마을의 존속 가치에 전통건조물과 더불어 주민의 삶이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외암 민속마을의 문화경관을 자연, 인문 경관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외암 민속마을의 문화경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제안한다. 외암 민속마을의 문화경관으로서의 역할을 조명해보고 현재 문화재보호법 시행 아래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된 7곳의 민속마을과 향후 지정될 민속마을이 보존·계승되기 위해서는 전통 가옥과 주민의 삶을 포괄하는 세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핵심어: 외암 민속마을,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문화경관, 문화재보호법

Abstract

South Korea's designation business for the folk village wa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necessity that can change the appearance of the 'Saemaül Movement' and its preservation of traditional village and relief. Use of this tradition can possibly be reinterpreted and transformed by the people. However, it was regarded as damage in the current policy. Because the folk village's policy is prescribed to people's lives, there is a fundamental conflict. In this paper, the life of the inhabitants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issue with traditional values surviving in the dry matter of the folk village. For this case, the Oeam Folk Village's cultural landscape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e two sections - one is natural landscape and the other is human landscape - and then confirmed and suggested as Oeam Folk Village's cultural landscape of identity. In order to preserve and inherit the seven folk villages designated as preserved traditional buildings and the future designated folk villages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policy.

Keyword: Oeam folk village, preservation area of traditional buildings, cultural landscape,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1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yeunhee.kim@kookmin.ac.kr

2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inhye.par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October 31.2015), Review (December 11.2015), Accepted(December 31.2015)

1. 서론

‘외암 민속마을’은 국가로부터 근대 문화유산 보호·관리의 일환으로 2001년 중요민속자료 236호로 지정된 예안 이씨의 종족마을이다. 외암 민속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된 까닭은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양반촌의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고자하는 국가의 정책 목표 때문이다. 그러나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일괄적인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어 국가의 정책 목표대로 주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외암 민속마을의 문화경관을 ‘풍수지리설과 유교사상이 깃든 자연적 경관’과 ‘양반사회의 전통생활 양식과 마을공동체의 민속적 풍습이 보존된 인문적 경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민속마을이 지닌 주민의 삶의 수준을 강제하고 있는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 민속마을과 문화재보호법

2.1 민속마을의 정의와 현황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민속마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건조물보존지구’를 말한다. 민속마을은 문화재적인 가치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유한 전통문화를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원 중 하나이다[1]. 따라서 민속마을은 원형유지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보호·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자연 취락 단위 전체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가옥, 부속건물까지 보존 대상으로 정한다[2].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7개 민속마을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이는 아산 외암 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236호, 2000.1.7)을 포함한 낙안읍성 민속마을(사적 제302호, 1989.6.14),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 1984.1.4), 성읍 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188호, 1984.6.12), 경주 양동마을(중요민속자료 제189호, 1984.12.24), 고성 왕곡마을(중요민속자료 제235호, 2000.1.7), 성주 한개마을(중요민속자료 제255호, 2007.12.31.)이다[1].

[표 1] 민속마을의 현황
[Table 1] Status of Folk Village

항목 마을	입지조건	관광수입	보존회	프로그램	건축적 보존현황
아산외암마을	서울,경기권에 가장 인접	입장료 징수	사단법인, 영향력 큼, 마을관리와 운영	팜스테이, 짚풀문화제, 장승제	각 세대마다 개보수가 다름
낙안읍성마을	전남. 순천시	입장료 징수	사단법인, 영향력 있음, 마을관리	낙안민속문화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	초가가 대부분 개.보수 이뤄짐
안동하회마을	안동시와 예천군, 의성군과 인접	입장료,주차료 징수, 유료관광객 적다	사단법인, 영향력 큼, 입장료 40% 관리	하회별신굿 탈춤공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원형에 가까움 (수리, 개조 적음)
성읍민속마을	제주도, 성곽내:성곽외 =13:87	무료입장, 특산물 판매	사단법인, 보존회 활동 미비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	초가가 대부분 알루미늄샤시 보수
경주양동마을	경주, 포항에 인접	무료입장, 상업활동 미비	비사단법인, 보존회의 활동 미비	-	원형에 가까움 (수리 및 개조가 덜함)
고성왕곡마을	고성군에 위치, 접근성의 어려움	무료입장, 상업활동 전무	사단법인, 보존회의 활동미비	고성왕곡마을 민속체험축제	부속채에 화장실, 창고 등 마련
성주한개마을	전남. 순천에 위치	입장료 징수	사단법인, 영향력 있음, 마을관리	낙안민속문화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	초가가 대부분 개.보수 이뤄짐

이 중에서 외암 민속마을은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 속하며 조선시대 유형문화재 2건, 무형문화재 1건을 보유하고 재정면적은 214.393m²이다[3]. 현재 외암(外岩) 민속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 외암 1리에 속하며 가구 수는 89가구, 가용 가구 수는 68가구이다. 외암마을의 가구 수와 인구 수: 1984년부터 현재까지의 가구 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남자 97명, 여자 104명으로 젊은 층에 수입원 부재로 인한 이탈현상으로 1984년 이래 절반으로 줄었다. 민속마을 영상관과 민속관, 매점 등 공공시설물 및 관광 시설물이 건립되어 있다.

15세기 넓은 농경지를 기반으로 외암 민속마을은 강씨·육씨·진씨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의 예안 이씨의 세거는 조선 명종(1534~1567년) 때 이정(李琺) 일가의 낙향에서 비롯되었다. 외암 민속마을은 유학자 이간(李柬, 1677~1727년)의 호를 따서 '외암(巍巖)마을'이 되었다. 당시 이간은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년),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년)의 계열을 잇는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유학자로 학문과 덕망이 높았다. 그에게 문정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사후에 불천위로 모셔지게 된다. 이후 이곳은 예안 이씨 후손의 번성으로 종범 질서와 사회적 규약을 따르는 양반 집성촌의 성격을 갖추었다.

2.2 민속마을의 보존정책

시대가 빠르게 급변하면서 전통 마을의 자취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이에 국가정책으로 전통의 마을과 산천이 지닌 고유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의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법령을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민속마을 지정 및 보존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양반촌 외암 민속마을은 1977년 도지정 민속마을로 지정된 이래,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 2001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중요민속자료 236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3년 정부의 농촌정책에 따라 테마마을로 지정되어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 마을 자치조직의 약화와 주민의 경제적 이해를 실천하는 신흥 조직의 강세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속마을 보존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하나는 관 중심의 민속마을 보존정책이다. 민속마을 보존 사업은 대상을 물질적 건조물로 제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삶을 규정하여 주체 간 갈등을 야기하였다. 다른 하나는 민속마을은 일괄적인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이다. 여기에 지역의 특수성과 비문화재 가옥의 거주민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마을이란 사람이 모여 사는 생활단위로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보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민속마을의 정책은 문화경관 유형으로 보았을 때, 전통 가옥과 주변 자연 환경 자연적 경관 보존이라는 편중된 시각으로 보고 다음 표장에서 외암 민속마을의 사례를 들어 자연적 경관과 인문적 경관이 함께 고려한 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민속마을 지정 및 보호관련 법령

[Table 1] Folk village designation and protection-related laws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제11조 제1항 관련) -중요민속문화재-	민속문화재가 일정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② 고유의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③ 한국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④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⑤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 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⑥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화확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3. 외암 민속마을의 문화경관 구성

3.1 외암 민속마을의 문화경관

외암 민속마을은 약 5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충청 고유격식인 반가의 고택과 초가 돌담 정원 등 생활환경이 보존되어있다. 문화경관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과 유산의 특성에 따라 ① 분명히 규정된 경관 ②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 ③ 연상적 문화경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에 속하는 '지속되고 있는 경관'은 전통적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역할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의 중요한 물질적 증거이며 지금도 진화 중이다. 이곳의 문화경관은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형성한 생활 방식과 민속적 풍경이 유기적으로 진화된 "지속되고 있는 문화경관"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 친화적인 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적과 의례, 더불어 마을의 전통문화가 훼손되지 않고 농경사회를 유지하면서 문화제와 축제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외암의 문화경관을 자연적 경관과 인문적 경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3.2 외암 민속마을의 자연적 경관

외암 민속마을의 자연적 경관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입지유형', '가옥배치', '길', '논밭'으로 나누었다. 이곳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기반을 둔 전통 마을의 지리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마을은 설화산에 등을 기대고 앞에 반계(盤溪)가 흐르는 배산임수의 입지유형을 갖추고 있다. 마을의 전체 규모는 약 40,000평으로 동측에 산을 등지고 서측에 하천을 대하고 있어 방향에서 전형적인 반촌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매서운 북서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의 비보림(裨補林)이 존재한다.

두 번째, 외암 마을은 후면형 종가양식을 따른다. 주산에서부터 종가와 주거지를 거쳐 경작지를 지나 안산에 이르는 양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마을구조는 약한 구릉지에 길을 따라 타원형 구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있다. 마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기와집과 대다수의 초가집이 혼재되어있는데, 대부분 100~200년 이상의 가옥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택들은 민가와 민속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양민속박물관에 기증되어 전시되고 있다. 고택에 특이한 점은 가옥주인의

관직명이나 출신지명을 따서 명명한 택호이다. 일례로 참판댁, 병사댁, 감찰댁, 참봉댁, 종손댁, 송화댁, 영암댁, 신창댁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참판댁(중요민속문화재 제195호, 1984.12.24) 과 영암댁(중요민속문화재 제233호, 1988.01.05)이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있다. 고택은 주로 'ㄱ'자, 'ㄷ'자 형태를 취하지만, 돌담을 포함하여 'ㄱ'자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세 번째로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길이 있다. 길은 도로와 수로로 나뉜다. 외암에는 5.3km에 이르는 돌담길이 조성되어있다. 돌담은 규모로 보았을 때 거대하기도 하지만, 막돌로 투박하게 쌓여있어 소박한 멋이 있다. 한편 마을의 수로는 마을 배치구성에 있어서 독특하다. 설화산에서 내려온 물이 마을의 수원이 되어 그 물이 수로를 통하여 가옥들을 연결하고, 나무와 주택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정원 형태로 되어있다. 이는 다른 마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다. 여기에는 방지와 중고, 곡수지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외암 마을은 드넓은 논밭이 형성되어있다. 마을에 주민 대부분이 논과 밭을 일구며 생활하며, 젊은 층 역시 직장생활과 더불어 농가 작물을 재배한다. 농경사회의 유지는 민속 풍경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하나 주민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과 밭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에 두는 무게 비중이 다르다. 예전에는 농경지가 곡물 재배와 생산의 경제 활동을 상징했다면, 지금은 팜스테이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산업 공간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외암 민속마을이 지니고 있는 인문적 경관의 요소를 나열하였다.

3.3 외암 민속마을의 인문적 경관

외암 마을의 인문적 경관의 요소로는 '종족마을', '문중의례', '마을 축제', '마을보존회와 주민생활'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암 마을은 18세기 중후반에 온양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가문인 예안 이씨의 종족마을이다. 예안 이씨들은 입향조 이사종의 5대손인 외암 이간에 이르러서부터 양반의 위치를 얻었다. 현재까지 여전히 마을의 중요한 직책과 마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예안 이씨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외암 마을은 이러한 유교 사회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문중의례(門中儀禮)와 종족의식(宗族儀式)을 유지하고 있다. 문정공 종가, 참판댁, 영암댁, 교수댁, 감찰댁에 독립된 사당이 위치해 있다. 예안 이씨의 묘제는 1년에 한 번 지내는 시제와 문정공 이간의 묘제, 그리고 진한평 묘제가 있다. 1960년대에 가정의례준칙이 선포된 이후 절기마다 올리던 사당 차례를 설날

과 추석으로 나누어서 지내고 있다. 시제는 선조의 묘소의 위치에 따라 음력 10월 1일부터 10회를 지낸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촌 현상과 인구감소로 인하여 시제에 참여하는 종종 원들이 줄어들자, 대안책으로 시제 날짜를 일요일로 정하여 지내는 문중이 생겨나고 있다[4].'

외암 마을의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음력 1월 14일에 마을의 안녕을 비는 장승제와 양력 10월에 열리는 짚풀 문화제가 있다. 장승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장승제와 다리제를 지내고 12시에는 느티나무제로 제를 마무리한다. 오후 1시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오곡밥 나누어먹기 정월대보름 행사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달집태우기, 윷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쥐불놀이를 즐긴다. 해질 무렵 달집태우기와 부럼 나눠먹기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5].

현재까지 16회까지 진행된 짚풀문화제는 추수 후에 주민들이 품앗이를 하면서 짚풀로 초가지붕을 해이고 미투리 망태기 등 농촌생활용구를 준비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갔던 농촌문화를 재현한다. 마을축제이며 동시에 지역축제로서 정체성을 갖고자 했던 짚풀 문화제는 당시 지역의 축제문화를 비판하며 주민과 지역의 활동가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재는 아산시의 주도로 외형적으로 확대되며 주민의 자주적인 목소리가 축소되었다[6]. 축제는 주로 짚풀문화 체험과 과거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급제행렬, 상여소리, 전통혼례 등 민속문화를 재연한 전통공연이 있다.

보조적으로 각종 부스에서 농산물 판매와 민속체험이 축제기간동안 항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암 마을의 보존회와 주민 생활을 살펴보자. 외암 민속마을 보존회는 외암리가 국가 지정되어 민속마을이 되던 1998년에 결성되어 2003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보존회는 마을에 10년 이상 거주한 정회원과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된 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보존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산시와 행정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축할 주택과 보수할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다.

외암 민속마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농업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외암 민속마을 내에 거주하면서 아산이나 천안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을을 나가서 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4. 외암 민속마을의 문화경관적 정체성

앞에서 '풍수지리설과 유교사상이 깃든 자연적 경관'과 '양반사회의 전통생활 양식과 마을공동체의 민속적 풍습이 보존된 인문적 경관'으로 외암 마을의 문화경관을 분석하였다. 두 경관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를 종합적인 시야에서 보았을 때 외암 마을은 "조선시대 충청 지역 양반사회의 줄기를 이어가는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외암 민속마을은 수도권과 밀접해 있어 타 민속마을에 비해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을 받기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존 정책과 맞물려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을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특유의 지방색을 잃지 않고 전통을 되살리려는 문화 의지와 역사적 자각이 장소적 특수성으로 발화했다. 이러한 국가 주도 보존정책과 주민의 정책 순응과 실천 의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마을의 형태를 증거하고, 그 속에 깃든 중요민속자료로서 연구 가치를 지닐 수 있었다.

5. 맺음말

외암 민속마을은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한 국가지정 문화재이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마을의 관광의지도 있다. 현재 체험관과 팜스테이 등 체험 위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온양민속박물관과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암 마을의 민속마을 지정과 보존 정책은 주민들에게 민속과 전통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반하여 나타났다. 마을의 보존 정책 시행 이후, 마을의 고건물과 전통 가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초가집을 낡고 불편함으로 인식하였으나, 민속마을로 지정된 이후 그러한 건축물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되었다[7].

다른 한 편으로 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존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자연적 경관과 인문적 경관 사이에 충돌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제한하였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생활 양식을 고수하기 위해 주민들이 감내해야하는 생활의 불편함과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초가집과 문화재지정 기와집간의 보존활동으로 얻는 경제적 수익이 격차는 건축 개.보수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보존 정책을 침해하게 된다.

때문에 본 연구는 민속마을 보존 정책에 문화경관의 관점을 제언하는 것이다. 자연적 경관과 인문적 경관을 융합한 문화경관의 관점은 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정책이 규정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정 문화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지키고, 기타 가옥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능률적인 정책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

- [1] J. W. Chin, Y. Y. Jang, S. W. Kim, Proceedings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07), Vol.27, No.1, pp.581-584
- [2] B. K. Yoo,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2008), Vol.18, No.2, pp.87-120.
- [3] J. H. Lee, The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1), Vol.27, No.2, pp.253-260
- [4] J. S. Choi,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Rural Society, Iljisa (1988)
- [5] Y. S. Kim, The Study of Transmission Programs for Sustainable Tradition through a Folk Village Festival,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4)
- [6] S. Y. Hong, The journal of Practice Folkloristics. (2011).
- [7] C. M. Kim, Korean Society for Local History and Culture. (2009), Vol.12, No.1, pp.457-487.